

#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1996. 4. 19

기획경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1996년 4월 9일

회부일자 : 1996년 4월 9일

다. 심정일자 :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('96. 4. 19) 심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 흥 일 성)

가. 제안이유

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의무출연규정을 재정여건 및 자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조정하고

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지역개발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의무출연규정(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% 이상)을 당해년도 기금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10% 범위내에서 출연하도록 조정 (안 제3조 2항)
- 위원회 정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폐지하고, 동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. (안 제14조, 제15조)



### 3. 전문위원 겸임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재평)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증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현행 조례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% 이상을 의무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자금 운용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등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여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여 재정여건 및 자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출연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,

또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첫째, 재원조달에 있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% 이상을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를 "10%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."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신축성있게 운용토록 하고

둘째, 용자조건에 있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

본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기능이 유사한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도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

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계조문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6명, 찬성 6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10. 심사보고서 불임 서류

-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

- 신·구조문 대비표